

『구미국가산업단지 혁신지구계획(안)에 대한 의견제시』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산업, 상업, 주거, 복지, 행정 등 주요기능이 집적된 거점을 조성하여 지역별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도시재생을 촉진할 필요가 있어, 뉴딜사업의 속도감있는 실행을 높이하고자 혁신지구 제도도입('19. 11.28 시행)
-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0조(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의 확정 및 승인) 제3항 규정에 의거 2019년도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공모를 위한 구미산업단지 혁신지구계획 승인 신청 전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의안을 제출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도시재생 혁신지구계획(안) 요약
- 나. 국가시범지구 지정요건 검토서
- 다.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도시재생 혁신지구 대상지 위치도

○ 사업개요

활성화계획 개요

■ 위 치 : 구미시 공단동 249번지 일원

■ 면 적 : 26,532㎡

■ 사업기간 : 2020~2022 (국가지원지구 선정 시)

■ 총예산 : 416억원 (국가지원지구 선정 시)

－ 재정보조 : 416억원 (국비 60% / 지방비 40%)

※ 중앙부처 협업사업 및 지자체 사업 제외

■ 배경 및 목적

- － 2018 구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
- － 대기업의 타지역 이전에 따라 산단 경제기반 쇠퇴 발생으로 지역경제 거점 상실 우려 (공장가동률 56.5%, 공실률 44%, 1990년대 비 청년인구 89% 감소)
- － 구미산업단지의 주요 전기·전자산업의 공동화 현상 심화, 대기업 의존형 산업구조의 한계, 기업지원서비스 등 정주환경 인프라 부족에 따라 구미산업단지의 자립력 상실 우려
- － 1,000여개 뿌리산업기반의 부품소재 제조기업의 생태계 회복을 위해 스마트산업단지 및 구조고도화 사업 등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한 신산업 육성 및 창업 생태계 활성화, 근로자 정주여건 회복으로 산단 내 시너지 효과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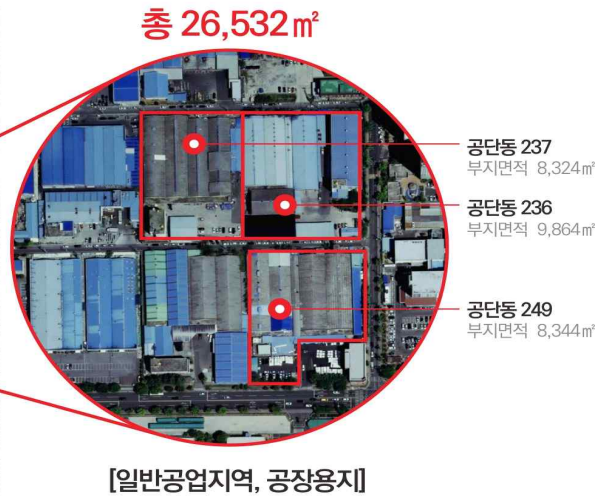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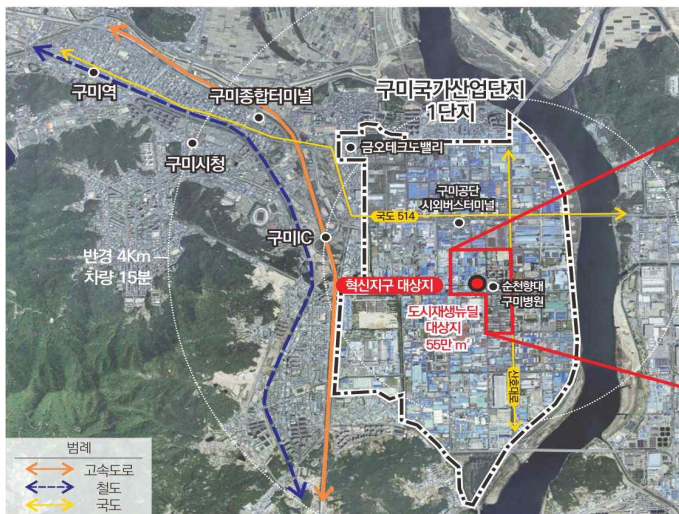
■ 일반현황

- － 도시계획/지목 : 일반공업지역 / 공장용지
- － 관련법령 :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: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
- － 부지개요

위치	면적	소유자	개별공시지가(원/㎡)
공단동 237	8,324㎡	(주)동광화섬	210,000 ('19. 1. 1. 기준)
공단동 236	9,864㎡	(주)성광	215,000 ('19. 1. 1. 기준)
공단동 249	8,344㎡	(주)성원직물	228,100 ('19. 1. 1. 기준)

※ 용도전환 : 산업집적법 제45조 2항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계획 수립 필요

○ 위치도



○ 추진경위

- 2019. 03. 07 :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착수
- 2019. 03. 13 :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한 주민설명회
- 2019. 03. 25 : 도시재생활성화계획(안) 착수보고
- 2019. 04. 04 : 도시재생활성화계획(안) 구미시 도시재생위원회 자문
- 2019. 04. 08.~04. 29 : 도시재생대학 통합워크숍 (3주차 과정)
- 2019. 04. 09. : 도시재생활성화계획(안) 관련부서 설명회 1차
- 2019. 04. 11. : 도시재생활성화계획(안) 주민공청회
- 2019. 05. 07. : 도시재생활성화계획(안) 의회의견청취
- 2019. 05. 15. : 도시재생활성화계획(안) 기업체설명회
- 2019. 05. ~10. : 국토부, 한국산업단지공단, LH 등 관계기관 협의 (20회)
- 2019. 09. 26. : 도시재생혁신포럼 1차워크숍
- 2019. 10. 08. : 도시재생활성화계획(안) 중소기업설명회 (기업동향보고)
- 2019. 10. 23. : 도시재생혁신포럼 2차워크숍
- 2019. 10. 28. : 도시재생활성화계획(안) 관련부서 설명회 2차
- 2019. 11. 13. : 도시재생 TF회의 (관련부서 회의)
- 2019. 11. 13. : 도시재생 신규제도 사업신청 설명회

○ 향후계획

- 2019. 12. 02. : 국가시범지구 신청·접수
- 2019. 12. 10. : 국가시범지구 평가위원회 (평가완료)
- 2019. 12. 24. : 국가시범지구 도시재생특위 심의 및 계획 승인

※ 향후계획은 국토부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국가시범지구 공모추진일정에 따라 변경가능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0조
(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)

5. 검토의견

- 본 「구미국가산업단지 혁신지구계획(안)에 대한 의견제시」 건 은,
-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0조(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) 제3항 규정에 의거 2019년도 혁신 지구 국가시범지구 공모를 위하여 구미산업단지 혁신지구계획 승인 신청 전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된 것으로
 - 국가시범지구 선정 시 총예산 416억원으로 2020년부터 2022년 까지 산업문화 특화, 근로 정주문화 활성화, 산업융복합 클러스터 구축 등을 추진하여 경제기반이 약화된 공단동의 도시 재생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